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34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박홍배 · 박정현 · 윤준병
김태선 · 한준호 · 박 정
전용기 · 이정현 · 조계원
이광희 · 맹성규 · 김현정
김상욱 · 안도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악취·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2조”를 “제21조의2, 제22조”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

에”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합허가대행업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4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제2항 또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5호,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② (생략) 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④ (생략)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1조 의2, 제22조-----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현행 제5호와 같음)
5. (생략)	

다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 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제4조제4항에</u>----- -----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6. (생략) 2. <u>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 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 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 우는 제외한다)</u>	제41조(벌칙) ----- ----- ----- ----- 1. ~ 1의6.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4조(벌칙) <u>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 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 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 설></u>	제44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 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u>

<u><신 설></u>	<u>경우만 해당한다)</u> <u>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u>
---------------------------	--